

자유 토론

사회자 심석태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인데, 오늘 세미나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해 입법론적으로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임의관할로 하는 것이 맞을지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패널 김기수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관할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재판 접근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강한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그렇게까지 관할을 제한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전속관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것처럼,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를 제기하거나, 여러 언론사들이 유사한 보도를 냈을 때 이를 한 번에 구제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로서 정정보도 제도를 구상한다고 한다면 굳이 전속관할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 하에서 정정보도는 소송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언론중재법을 구상할 당시에는, 이미 불법행위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려에 의해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신속한 기간 내에 심리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두지 않았습니까.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쳐서 소송하도록 한다면, 더욱 해당 법원을 특정 법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행정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라든지, 특별심판 규정에 따른 특허법원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먼저 전제되고 이후 특정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유형의 사건들은 모두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 관련 소송 역시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 인정된 유형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연혁을 봤을 때, 반론보도 등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치 절차를 거치도록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공익적 필요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존처럼 위법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충분한 본안 절차로서의 정정보도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와 유사하게 매우 신속한 형태의 새로운 구제 수단으로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전속관할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애초에 절차 자체가 가처분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자체가 어렵고, 따라서 관련 재판적이 문제될 여지도 처음부터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상당히 정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정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널 오정후

민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공법 영역에서 말하는 공익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경매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차의 정돈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다른 분 발제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언급된 바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수십만 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에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몇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언론사건에서 과연 이런 의미의 공익이 있을까? 예를 들어, 언론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패널 이수종

독일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위르겐스가 “언론사건은 경쟁법이나 특허법

처럼 특별한 재산권이나 특수한 권리를 다루는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사인 되링이 “인격권과 언론 자유 사이의 형량 판단은 우연한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이상, 명확한 판례법과 그에 관한 근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양 법익의 기준을 수십 년에 걸쳐 재조정해온 수많은 연방대법원 판결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유럽 법원의 원칙들에 대한 판사의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면, 언론법 영역에서의 전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오정후 교수님께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언론 소송을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또 실제로 우리 법원이 언론 소송을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패널 채휘진

최근 들어오는 사건들 가운데, 한 신청인이 여러 언론사를 동시에 상대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속관할 해석을 적용하게 된다면, 언론사별로 해당 지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언론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패널 문윤정

언론사는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다루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관할로 해석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업무 부담 경감이나 편의 등을 이유로 전속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에 비추어봤을 때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만약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속관할로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입법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검토하게 될지 황성필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황성필

소송의 출발점은 언론보도의 존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나 취재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받고 재판부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재지 관할로 두는 데에 나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속관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상정해왔던 대형 언론사가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한 언론환경, 특히 소형 언론사나 새로운 매체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김기수 판사님께서 발제문에서, 법원 실무상 정정보도청구의 관할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의 근거를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가 아닌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임을 특정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둘 간에 위법성 판단의 문제라든지, 규범적 책임의 구조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패널 김기수

정정보도는 원래 반론보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위법성이나 고의·과실에 따

른 명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조건 아래에서, 사실 언론사가 열심히 취재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게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자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청구권을 새롭게 도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런 새로운 청구권의 인정으로 인해 언론사에게 부담이 생기는 만큼, 언론중재법에는 원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언론 자유와의 조화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비교적 약한 요건 하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최소한 소송 대응만큼은 언론사가 조금 더 편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균형적인 고려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는 가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처분 절차에 의했을 때는 훨씬 더 언론사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소송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은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조금 더 방어 기회가 늘어나고, 다시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속관할로 인해서 언론사에게 주어지는 절차법적인 배려나 공익적 고려도 조금 완화되어서, 이제는 꼭 그런 정도의 배려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사 부담 완화 내지 언론 자유와의 조화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입법론적으로는 반드시 전속관할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에 대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관할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관할까지 지정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패널 김기수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이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들의 입장도 있고, 더 증명하고 싶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 끊고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보통은 피해구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 증거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3개월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약간의 반성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취지상 원래는 정말 간이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실 여부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반론보도입니다. 반론보도는 정말 그야말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절차거든요. 사실 깊이 있는 심리까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처분 절차에 따라 ‘나는 반론할 이익이 있다’ 정도만 인정되면 신속하게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반론보도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정정보도를 주위적 청구로, 반론보도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해서 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가처분 절차로 가야 할 반론보도까지 결국 소송 절차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정정보도를 심리하다 보면 그것도 한세월이 걸려서 1년 뒤쯤 가서 정정보도는 인정되지 않고 반론보도만 인정되는 식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론보도는 분리해서 가처분 절차로 따로 진행하고, 우선 신속한 구제를 받은 다음에 진실 여부는 나중에 다시 다룰 수도 있는 구조가 원래 취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패널 채휘진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개혁이 굉장한 사회적 화두였던 당시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에 좀 더 근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같은 요소를 따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실어줘라’에 가까운 한국만의 권리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애초부터 법에서 피고 보통재판적으로 한다고 못 박았던 것은, 아마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일 사례를 보면서 ‘이런 유형은 결국 피고 재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그렇게 정하자’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성격을 명시하면서 설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제도를 쪼개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름도 바꾸고 절차도 나누다 보니 ‘정정보도를 어떻게 심리도 없이 가처분으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정정보도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통재판적으로 한다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정정보도청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재판적보다도 오히려 피고 보통재판적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당시 제도 자체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언론피해 회복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피고 재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심석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현행법 하에서 우리가 언론 실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는 이의신청 사건들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패널 황성필

정정보도청구가 소송으로 가고,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는 가처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엮이면서 판단에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사실 정정보도청구와 관련된 심리를 하면

서 나오는 파생적인 청구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자료를 어디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손해배상과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 소재지로 하지 않게 되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사이의 제도적 차이가 사실상 정도의 차이만 남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건 자체는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만, 언론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라는 공통된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손해배상청구와 병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소재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이게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만 있다가, 나중에 2005년도에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면서 손해배상 부분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같은 문제도 함께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시청자나 독자를 고려해야 하고, 언론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사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법조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문윤정 변호사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패널 문윤정

저도 궁극적으로는 실무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기관적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법원이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김기수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실무상 전속관할로 해석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우선은 그 관행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의 자동소제기 시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사건기록을 보내고 있는데, 피해자(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피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 쪽 관할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패널 오정후

최근 몇 년 사이 민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된 전속관할 중 하나가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전속관할을 두게 된 건데, 그 이유는 기술 문제나 전문적인 내용 때문에 일반 재판부에서 심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큰 법원의 전문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전속관할을 설정한 것이죠.

만약 언론사건에도 그 정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면, 즉 기술사건처럼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입법론적으로 전속관할으로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언론사건이 일반 판사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기술사건처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본다면, 굳이 전속관할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 당장 어떻게 실무를 운영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절차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할 때 현재 법원 실무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지금처럼 언론사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또 언론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문윤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양한 유형의 원고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언론사 소재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꼭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황성필 입법조사관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명예훼손 소송이나 언론 관련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나 자료 같은 것들이, 과연 반드시 현지에 가 있어야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이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자체를 들고 와서 심리하는 사건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관할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패널 이수종

독일에서도 이동관할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도 사전에 정해진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법원 조직이나 관할 역시 미리 정해져 있어야 민사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취지의 헌법상 원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권자가 선택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정정보도청구권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아닌 다른 재판적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또 누군가 전략적으로 특정 재판적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결국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심석태

김기수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소송이 계속 들어온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현재 방식대로 해석해서 관할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해석할 여지 역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패널 김기수

현재 언론 전담 재판부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속관할임을 전제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만으로 곧바로 입장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이런 안내까지 함께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은 피고 주소지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손해배상 사건이 함께 붙어 있으니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만 유지할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원고 주소지 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예측 가능성, 선택권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석태

마지막으로 채휘진 중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 지금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패널 채휘진

해당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순간, 피고 주소지 법원 외의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대로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예를 들어 전국에 여러 피고들이 산재되어 있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당사자의 업무 특성상 출석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법원 실무는 현재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 측에서 다른 방식의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이후 법원 단계에서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다른 법적 구성을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가능성 정도는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오늘 논의가 알려지고 나면 국내 언론사들이 앞으로는 관할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언론사들도 ‘아, 관할을 다투는 데에도 실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는 사건 흐름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차적 전환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언론피해 구제절차 이용자 관점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 김재원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김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패널분들이 여러 가지 연역적 논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기본법상 최초로 도입됐던 제도인데, 당시 언론기본법상의 청구권 내용은 지금 언론중재법처럼 ‘언론보도가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언론보도청구권에 더 가까운 형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청구가 들어오면 비교적 간단하게 가처분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후 언론중재법에서는 사실에 반하는 보도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면서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 언론기본법상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입법론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된다면, 이런 서로 다른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정보

도는 본질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두 제도를 서로 다른 관할 구조로 설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심석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기자 시절 국회를 출입하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항들이 다 연역적으로,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김기수 판사님 말씀처럼 ‘왜 이 조항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조항의 경우도 지금 돌이켜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반론 보도청구권을 ‘정정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기본법에 넣어두었다가, 이후 지금의 실질적인 정정보도 개념도 들어오고,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덧붙여지는 과정 속에서 관할 규정만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참고해서 실무 운영을 해주실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향후 법을 정비하거나 개정하는 논의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요즘은 언론 관련 법 개정 논의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깐요.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